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일시 : 2001년 5월 31일 오후 2시

장소 : 종로성당

■ 공동주최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신문 대자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평화인권연대

■ 후원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토론회 순서 —

★전체사회 :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학교)

● 사회자 인사말과 소개

● 제1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

조국 교수(동국대학교)

● 제2 -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임종인 변호사(여호와의 증인 공동변호인단)

● 관련자 증언 및 토론

정진우 목사

채의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63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정보인(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93년 훈련거부자)

임성호(89년 전투경찰 양심선언자)외

● 이후 자유토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

曹國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I. 머리말

근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주로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따른 '전향' 및 '보안감호처분' 제도, 그리고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 제도 및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는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회피자 정도로 치부되면서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 한 해 평균 400여명의 집총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 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¹⁾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군입대를 거부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이른바 '군(軍) 도바리'—가 있었으나, 이러한 입대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특정 종교인의 부담으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 재생산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단지 특정 종교인에

* Copyleft©2001. 완성된 원고가 아니므로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필자의 동의를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자우편 주소는 kukcho@dongguk.edu.

1) 한겨례신문, 2001.4.18(수).

게 ‘특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며, 종교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먼저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시작한다. 이어 이 글은 외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 권리는 이제 국제법적인 인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기 위하여 짚고 넘어 가야 할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한다.

II.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서구의 역사에서 양심의 자유는 원래는 신앙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었다. 양심의 자유는 서구에서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폐비린내 나는 대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배적 종교 하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투쟁에 의하여 정립된 자유이다.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헌법, 독일의 1818년 바이에른 헌법, 1850년 프로이센 헌법, 1919년 바이마르 헌법 등은 두 자유를 한 틀에 둑어 보장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 말 천주교도의 순교, 일제치하에서 기독교도의 신사참배 거부 등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동시에 침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정신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19조 역시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의 규정방식이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가 시민의 기본적 인권임은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다른 각종의 정신적 자유, 예컨대 사상, 학문, 학문, 예술의 자유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첩되어 발현하기 마련이다(특히 우리 헌법의 경우 사상의 자유보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우리 헌법 제19조는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²⁾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³⁾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넓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의 어떠한 정신적 자유보다도 제1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이며, 또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정신적 기본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양심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내심의 자유’(forum internum)는 물론이고, 자신의 양심에 대하여 침묵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말을 빌자면,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2) 권영성, 『헌법학원론』; 김철수, 『헌법학개론』; 허영, 『한국헌법론(신판)』.

3) 현재 1996.3.27, 96헌가11.

4) 현재 1991.4.1, 89헌마160. 이 결정은 ‘사죄광고’의 강제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헌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되어 왔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히 보장하려는 취의라고 할 것이다.⁵⁾

그런데 양심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내심의 자유’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⁶⁾ 그러나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rum)는—소극적으로 양심을 지키는 침묵의 자유이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이건—“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 파악되고 있다.⁷⁾ 요컨대 우리 법원은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소극적으로건 적극적으로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거부한 여고생에 대한 제적처분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⁸⁾ (구)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⁹⁾ (구)사회안전법이 ‘전향’ 여부를 보안처분면제요건 또는 보안처분기간의 개선여부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¹⁰⁾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처분은 피보호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처분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¹¹⁾ 등이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본격적 비판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겠으나, 여기서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그 실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 하더라도 그 제한의 방법과 정도가 타당한 것인지 등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만 짚어두기로 한다.

한편 이 글의 주제인 양심적 병역거부권 역시 법원에 의하여 일관되게 부인되어 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병역법은 위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모든 국민은 다같이 이에 따라야 하며, 피고인이 ‘애호와의 종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고 그 교리에 크리스토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된다].¹²⁾

5) Id.

6) 대판 1984.1.24, 82누163.

7) 현재 1998.7.16, 96헌바35.

8) 대판 1976.4.27, 75누249.

9) 현재 1998.7.16, 96헌바35.

10) 대판 1997.6.13, 96다56115.

11) 현재 1997.11.27, 92헌바28.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단호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정병제는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필수적 권한으로 이해되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병역거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애국적’ 범죄행위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신조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III.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된 최초의 사례는 1776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헌법이다. 동 헌법 제8조는 “집총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심적 가책을 느끼는(Conscientiously scrupulous) 어떠한 사람도 그가 대체복무를 하려 한다면(if he will pay such equivalent) 집총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라고 선언한다.¹³⁾ 이러한 입장은 1777년 버몬트주 헌법(제9조), 1776년 데라웨어주 헌법(제10조), 1784년 뉴햄프셔주 헌법(제13조) 등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려면 병역거부가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또는 종교적 믿음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믿음은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¹⁴⁾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일체의 전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현대에 들어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유럽 여러 나라에 걸쳐 헌법에 명문화된다.¹⁶⁾ 유럽에서는 독일 헌법이 선구자인데, 1949년의 독일 헌법 제3조는 유럽에서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하는 군복무를 강제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어 1976년 포르투갈 헌법(제41조 5항), 1978년 스페인 헌법(제30조 2항) 등도 동일한 내용을 선언하였다.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던 동구 여러 나라도 체제 붕괴 이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예컨대 크로아티아 헌법(제47조), 슬로베니아 헌법(제123조), 에스토니아 헌법(제124조), 슬로바키아 헌법(제25조 2항), 체크 공화국 헌법(제15조 3항), 그리고 러시아 헌법(제28조) 등이 있다. 한편, 유

12) 대판 1969.7.22, 69도934. 동지의 판결로는 대판 1955.12.21, 65도894; 대판 1976.4.27, 75누249; 대판 1985.7.23, 85도1094 등을 참조하라.

13) Pa. Const. of 1776, art. 8.

14) Welsh v. United States, 398 U.S. 333, 340 (1970).

15) Gillette v. United States, 401 U.S. 437 (1971). 단 더글拉斯 대법관은 특정전쟁에 대한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함시킨다 [Id. at 463-475 (Douglas, J., dissenting)].

16) Honorable Jose de Sousa e Brito, “Political Minorities and the Right to Tolerance: The Development of a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constitutional Law”, 1999 B.Y.U. L. Rev. 607, 611-12.

럽 외에는 브라질, 우루과이, 수리남, 잠비아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헌법적 보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1940년 ‘Minersville School District v. Gobitis’¹⁷⁾의 다수의견이 국기경례의식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외로이 소수의견을 제출한 스톤 대법관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기경례의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한 제척처분이 합헌이라는 보는 다수의견은 “소수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대중적 의지(popular will) 앞에 굽복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¹⁸⁾ 민주주의란 다수의 지배이지만, 다수의 지배의 이름 하에 소수자의 양심과 신념을 무시하는 것은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임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톤 대법관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1943년 ‘West Virginia State Bd. of Education v. Barnette’¹⁹⁾에서 다수의견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건 국가가 시민에게 말 또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를 수 있다는 자유(freedom to differ)는 사소한 사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질서의 짐장을 견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다는 자유”라고 선언하였다.²⁰⁾

요컨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헌법적 보장은 병역의무라는 국가존립을 위한 핵심적 사안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소수자집단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선언이다. 이는 소수자의 양심이 아무리 국가질서에 위협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을 헌법적 차원에서 용인·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 유엔

이상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제법적으로도 수용되어 가고 있다. 먼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 1항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데,²¹⁾ 여기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²²⁾ 과거 전통적 견해는 이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²³⁾ 그러나 근래의 국제사회에서는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흐름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최초의 유엔 차원의 결의는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1987년 결의인데,²⁴⁾ 이 결의는 각 국가에게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

17) 310 U.S. 586 (1940) (Stone, J., dissenting).

18) Id. at 606.

19) 319 U.S. 624 (1943).

20) Id. at 641-642 (강조는 인용자).

21)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18(1).

22) 이 규약초안 작성시에 필리핀 대표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포함시키는 제안을 하였다가 철회한 바 있다[Marie-France Majo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International Law: A Human Right?”, 24 Case W. Res. J. Int'l L. 349, 357 (1992)].

23) Marie-France Major, “Conscientious Objection and International Law: A Human Rights?”, 24 Case W. Res. J. Int'l L. 349, 357 (1992).

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호소하였다. 단, 이 결의는 해당 국가에서 최종적 재량을 남겨두는 조언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²⁵⁾

이후 동 위원회는 1989, 1993, 1995년의 결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ICCPR 제18조 속에서 근거지웠다.

1989년 결의는 호소 수준을 넘어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ICCPR 제18조에 기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자체를 인정하였고,²⁶⁾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유엔현장상의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켰다.²⁷⁾ 그리고 1993년 결의는 이전의 결의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법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 것을 호소하였다.²⁸⁾ 또한 1995년 결의는 1993년 결의의 내용을 재확인한 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 즉, 동 결의는 각 국가가 법과 관행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진 특정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그들을 구별하지 말 것,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²⁹⁾

한편 ICCPR 제18조에 대한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의 1993년 ‘총평’도 동일한 결론을 제출하였다.³⁰⁾ 동 ‘총평’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규약[ICCP]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살상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양심의 자유 및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정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구별해서는 안되며, 또한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³¹⁾

한편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일체의 불관용과 차별의 제거를 위한 선언’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²⁾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³⁾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⁴⁾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⁵⁾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⁶⁾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⁷⁾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⁰⁾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

24) E.S.C. Res. 1987/46, 43 U.N. ESCOR Supp. No. 5, at 108-109, U.N. Doc. E/1987/18; E/CN.4/1987/60 (1987).

25) Matthew Lippman,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21 Cal. W. Int'l L.J. 31, 51 (1990-91).

26)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um. Rts. Comm. Res. 1989/59, U.N. ESCOR, 45th Sess., 55th mtg. at P 1, U.N. Doc. E/CN.4/1989/59, Preamble, P 1.

27) Id.

28)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um. Rts. Comm. Res. 1993/84, U.N. ESCOR, 49th Sess., 67th mtg. at P 1, U.N. Doc. E/CN.4/1993/122, P 7.

29)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um. Rts. Comm. Res. 1995/83, U.N. ESCOR, 51st Sess., 62d mtg. at P 1, U.N. Doc. E/CN.4/1995/176, P 4.

30) U.N. Hum. Rts. Comm., General Comment 22 [48] (art. 18) P 11.

31) Id.

32)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Report Submitted by Mr. Abdelfattah Amor, Special Rapporteur,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6/23, U.N. ESCOR, Hum. Rts. Comm., 53d Sess., Provisional Agenda Item 19, U.N. Doc. E/CN.4/1997/91 (1996).

양(態樣)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불인정, 시민권 박탈, 시민적 권리 박탈,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투옥, 그리고 대체복무제도의 부존재 등이다.³³⁾

(2) 유럽³⁴⁾

한편 유럽의 경우 1967년 ‘유럽회의’의 ‘자문의회’(the Consultative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결의 337’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한다. 이후 이 결의에 기초하여 1987년에는 ‘유럽회의’의 ‘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각국에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추천 87(8)’을 채택하였다. 한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983, 1989년의 결의를 통하여 이상의 점을 재확인한다.

3.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한편 전세계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997년의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³⁵⁾

먼저 1997년 현재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병제가 없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69개국이고,³⁶⁾ 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하는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3개국이며,³⁷⁾ 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로는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의 2개국이다.³⁸⁾

한편 정병제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에게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또는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크 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이다.³⁹⁾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장한 군부대 내에서 비전투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는 2개의 국가가 있으며, 법률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3개의 국가가 있다.⁴⁰⁾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

33) Id. Vol. 7, P 21(a).

34) Lippman, at 46-47; Major, at 359-361 참조.

35) The Ques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prepared pursuant the Commission resolution 1995/83, U.N. ESCOR, 53rd Sess., Provisional Agenda Item 23, U.N. Doc. E/CN.4/1997/99.

36) Id. at Annex II (1).

37) Id. at Annex II (2).

38) Id. at Annex II, Table II.

39) Id. at Annex II (4).

40) Id. at Annex II(5)(a)(b)..

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파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폐루, 혼두라스 등 48개국이 있다.⁴¹⁾

IV.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점검사안

이상에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더 이상 주변적 관심사항이 아니라, 양심·사상·종교의 자유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한국에 실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특정 종교신자에 적용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제칠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권리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권리는 '종교의 자유'에서만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종교와 무관한 '양심의 자유'에서도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두 종교의 신자가 아니더라도 철저한 평화주의자—'불살생'과 '불축살생구'의 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불교승려 또는 신도이건,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전쟁은 악이라 믿는 무정부주의자이건—라고 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할 때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1995년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결의의 정신이 살아날 것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될 수 있는 병역거부의 정도이다. 제3장 1절에서 상술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는 특정 전쟁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일체의 전쟁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가상의) '대일본전' 참전은 거부하는데 (가상의) '남북한전쟁'은 참전하겠다고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다. 반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특정 전쟁에 국한된 집총거부—이른바 "선택적"(selective) 병역거부—도 그것이 양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있다.⁴²⁾ 양심의 자유의 철저한 보장이라는 관점에 서자면 후자가 타당하지만, 현 단계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적" 병역거부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양태와 기간 문제이다. 먼저 양태와 관련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제3장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군부대 내에서 비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정신을 살리자면 대체복무제는 시민적 통제하에 놓여야 하고, 그들이 종사하는 일 역시 비군사적 성격을 띠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존재하는 '공익근무제도'를 활용하되 군사훈련을 면제한다면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양태와 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는 군복무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복무기간 보다 과도하게 늘려 잡는다거나, 대체복무의 직종을 이른바 '3D직종' 등에 국한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근본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대

만의 경우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복무기간 보다 4-6개월 더 길며, 복무분야도 경찰, 소방업무 등 사회치안분야와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양로원 봉사 등 사회봉사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집총거부의 양심에 대한 판단절차의 문제이다. 신체검사나 징집통지를 받았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은 집총거부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고—종교인이라면 신도라는 증명서와 신앙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관계자, 종교인, 윤리학자,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입대한 사람 중에서도 새로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⁴³⁾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의 구제절차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 보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專制)일 뿐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우리 법원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관찰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1) Id. at Annex II(6).

42) Amnesty International, Out of the Margins: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Europe (15 April 1997).

43) 영국의 경우 신병이 군대에 입대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제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지기룡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소수에 대한 관용, 빈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사상과 신념에 있어서 다양하게 마련이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수가 소수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7세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모든 별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다. 일찍이 지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명마저 걸어야 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생애를 마칠 무렵까지 지동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출판하지 못하였고, 한 세기 후에 자신이 발명한 망원경을 통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직접 실험으로 증명한 갈릴레오는 1633년 종교재판에서 지구가 돈다는 이론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소수의 인권 문제이자 양심과 신앙의 문제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활발하게 토론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유]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소수가 다수와 다른 양심,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등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서 처벌된다(병역법 제87, 88조) 이 경우 1년 6월 내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군대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양심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총기를 수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된다(군형법 44조) 이 경우 징역 3년형이 선고되어 확정과 함께 민간인으로 전역된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91년 이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거부자 3,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한해 평균 약 400명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이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의 수가 92년 220명 93년 277명 94년 233명 95년 437명 96년 355명 97년 403명 98년 474명 99년 513명 2000년 642명으로 90년대 초

에 비하여 3배정도 증가하였다. 현재 15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

우리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판례에 그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위반으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상관이 총을 두 번 주어 다 받기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군복을 지급할 때 총을 주고, 다음날 훈련할 때 또다시 총을 주어 거절하면 두 번 거부로 간주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해괴한 법 적용이었다. 어차피 총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두 번 총을 준다고 한번은 받고, 한 번은 안 받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일부 군법무관이 군장성들의 투철한 군인정신-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총을 안 받느냐, 이런 나쁜 놈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에 영합하여 개발한 해괴한 법 적용이었다.

이를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1999년 9월 14일 선고한 92도 1534 판례는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번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많은 군법무관들이 이는 너무 어색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자, 94년 아예 군형법 44조 항명죄의 최고 형량을 3년으로 높였다, 그뒤로 지금까지 계속 3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 의무 복무기간은 2년6개월에서 2년2개월로 줄었는데,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형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94년 항명죄의 최고형량을 3년형으로 늘린데 대한 입법취지에는 특정종교의 병역거부를 억제하기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군형법등 형사벌의 법정형을 올리면서 특정종교라는 그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취지만 봐도 어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4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형량을 높인 것이 위 입법취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의 이유

여호와증인은 1870년대 초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찰스테이즈 러셀 주도로 작은 성서연구그룹이 발족된 것을 태동으로 하여 현재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세계 230개국의 나라에 여호와증인의 신도가 있으며 그중 110개국에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신도수는 2000년 현재 6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미국에 100만

명, 독일 16만명, 러시아 11만명, 일본에 22만명, 한국은 8만7천명의 신도수가 있다. 여호와의 종인 조직은 각 지부산하에 지역으로 나뉘고 각 지역을 순회구로 구분하여 1순회구당 20개 회중이 있는데 각 회중에서의 여호와의 종인 신도수는 약 200명 정도 된다.

여호와의 종인은 십일조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의 목사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따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장로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음)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비리가 있던 적이 전혀 없다.

여호와의 종인은 그리스도교 정신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마태복음 5장 44절, 22장 52절, 출애굽기 20장 13절) 등 성경의 여러 가르침에 따라 총칼을 들지 않고 나아가 군복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서도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교훈에 따라 원수를 사랑했고 살인 행위를 극력 죄악시하면서 병역을 거부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서울대서양사학과 교재인 서양사개론에도 ‘로마는 처음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으나 교세가 확대됨에 따라 교인들이 황제예배를 거부하고 병역거부를 하므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되어 있고, 서기 295년 로마제국에서 살던 막시밀리아누스를 비롯한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여 순교를 택하였는데, 후세에 이르러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인의 참전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타협을 보게 된 것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전쟁이나 병역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와 성서의 가르침 및 종교적 신념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여호와의 종인은 이러한 성서적 가르침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성서적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이념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새기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종인의 병역거부의 역사

여호와의 종인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본을 따르고 있는데 역사가 브라이언 던은 [대학살에 대한 교회의 반응(1986년)]이라는 저서에서 “여호와의 종인은 나치와 화합하지 않았다. 나치가 이 종파에 반감을 품은 주원인은 여호와의 종인의 정치적 중립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바대로, 나치독일에서 여호와의 종인은 총통에게 손을 들고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라고 외쳐 경의를 표하는 것마저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종인과 나치즘과는 충돌이 거의 불가피하였는데 이는 [하일 히틀러 Heil Hitler!]라고 외쳐 히틀러 만세를 외치는 것은 구원이 히틀러로 말미암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므로 히틀러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카이사르에게 승배행위를 하는 일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로마 투기장에서 죽어간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나치 치하에서 여호와의 종인은 병역거부를 이유로 약 1만명이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그 중 2500명 이상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치치하에서 여호와종인이 순교한 것은 나치 치하의 유대인 학살이 민족적인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종교적 이유(여호와 종인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박해를 당한 것이다.

나치치하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어져서 학살되는 등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카톨릭과 다른 기독교인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히틀러를 환영하였는데 카톨릭역사가 E.I. 왓킨은 히틀러가 벌인 침략전쟁을 카톨릭에서 후원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헤어교수는 3200만명의 독일 카톨릭교인 중(그중 1550만명은 남자인데) 단지 일곱사람만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하였다고 고증하고 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인으로서 그들은 시초부터 명명백백한 교리적 반대입장을 천명하였고 그에 따른 고난을 감수하였다. 그들은 나치국가에 대한 여하한 협력도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종인은 나치치하에서 황금시대와 위안지(현재의 파수대와 깨어라)를 통하여 나치의 만행을 폭로하고 1940년까지 20개 강제수용소의 이름을 밝히고 그곳에서의 가공할 실태를 보도하였다. 또한 병역거부 및 히틀러에 대한 만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슈타포는 독일 전역에서 여호와의 종인을 체포하기 위해 혈한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1만명(당시 독일에서의 여호와의 종인 숫자는 2만 5천명 정도로 추정)이이 체포되어 2500명 이상 순교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대학살기념관에는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여호와의 종인을 식별하게 해주던 보라색 삼각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컴퓨터 자료로 그 내용을 열람하도록 되어 있다. 2차대전후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여호와의 종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발견되는 대로 시베리아에 강제노동수용소로 유배되었다.

한국에서의 여호와의 종인의 역사

1912년 미국인 선교인 로버트 R. 헐리스터가 내한하여 전도하기 시작한 이래 여호와의 종인들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당시 군국주의 노선에 있던 일본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오다가 1933년에는 여호와종인의 출판을 위해 설립한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일본식 표기 : 등대사) 발행의 종교서적이 내무성의 명령으로 종로경찰서와 평양경찰서에 의해 13종 5만부가 압수되기도 하였다. 이 압수수색은 당시 독일에서 나치에의 협력을 거부한 여호와종인에 대한 히틀러의 대대적인 탄압의 물결에 일본이 동맹국인 독일과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에 따라 천황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전쟁을 성전(聖戰)으로 선포하고 그를 지지하는 성명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일본내에 있는 여호와의 종인이 천황의 신격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자 사태는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한국과 타이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종인에 대하여 남녀, 노약자를 불문하고 일대 검거선풍이 몰아닥쳤다.

일본 내무성 내부문서인 사상월보(1941년 1월호)와 특고월보(1939년 6월호)에 따르면 일본 115명, 한국 30명, 타이완 9명의 체포자명단이 게재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고등법원검사국 사상부 비밀문서인 사상汇报 속간은 한국에서 총 33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증인은 한국인들에게 병역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신사참배거부를 이유로 한 불경죄와 치안유지법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것이었다.

[일제의 한국기독교 탄압사] 85면에는 “여호와를 유일절대신으로 하는 신관과 천황제와의 대결 그리고 신사참배의 거부가 소송기록의 하나의 초점이 된다. 등대사 멤버들이 피조물로서의 천조대신이나 천황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천황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되어 있다. 일제치하에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서 모두 겸거되어 탄압을 받았는데, 일본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들 중 몇 명은 순교하였으며, 그 가운데 2명의 여성은 옥사하기도 하였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와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태도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함없이 계속되었는데, 전쟁 위기감이 팽배하였던 한반도의 사정은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입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가주의적 기조에서 바라보도록 하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투옥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시각에 오해의 골이 깊어졌으며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랫동안 그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자식이 교도소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으며 늙은 부모와 부양할 가족을 두고 실형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형제들이 줄줄이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군국주의하에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치른 혹독한 고통의 기록도 한반도의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역사의 기록 뒤편에 가리워지고 있었다.

근자에 와서 기독교계는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하여 참회하고 있는데(중앙일보 1997년 11월23일호) 여호와의 증인은 교단 전체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그로 인하여 투옥되고 목숨까지 잃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조류에 따른 한국에서의 대체복무 제도도입 기대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민주국가들은 모두 대체봉사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주국가인 한국에서도 국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아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끄니풀이라는 의심을 받았고, 민주 국가에서도 징병제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병역거부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 성서상의 보편적인 진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든 나라에서 일관성 있게 고수해온 보편적인 입장이다.

점차 많은 정부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인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미국과 서구 남미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러시아와 동구의 여러나라들도 법적으로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군사적인 대체봉사를 마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녀 모두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는 대체봉사를 요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증인임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으면 입영을 1년씩 연기해서 일반군인의 복무기간이 끝나는 3년 동안 연기되면 자동면제되는 연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 입장도 절대다수의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호와 증인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의무 대신 대체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로서 군대에 가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7만여명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들은 약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있으나 여호와의 증인은 위와 같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 대신 대체복무 기본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체복무 중에서도 매우 힘든 3D업종에 속하는 복무를 3년이상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마치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는데 대한 깨달음은 저희 공동 변호인단이 변호활동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인데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여러 신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사회가 아직 얼마나 많은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소수자들에 대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학생, 노동자, 농민, 재아인사 등 양심범을 변호사들은 변호하고, 민가협, 엠네스티등이 지원했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지원, 변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은 집총만을 거부하겠다는 것일 뿐 군복무에 벼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욱 힘든 어떤 일이라도 군복무에 대체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양심적인 행동이 오랜기간 동안 별다른 국민적 반성없이 처벌받아 왔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이 1945년 해방후 건국이래 지금까지 10,000명이상이 징역형을 받고 형을 살았다. 지난 5. 15 용인에 있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건국후 처음으로 변호사(임종인, 김병주, 조광희, 김수정, 송기원)들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여 여호와의 증인신자 18명의 의 집총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관심과 여론형성에 발맞추어 국회의원들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법제화를 위하여 금년 6월경 공청회를 준비하고,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많은 세월 동안 조용히 모든 고통을 참으며 징역형을 감수하고, 사회 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평화적 투쟁의 승리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 관련 기사 / 칼럼

[특별기획] “징집거부권, 더 많이 알려야 한다”

- 세계의 평화단체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들이 한국에 모여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3월17일 오후 2시30분, 파주의 한 연수원에는 배낭을 멘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50명의 참가자들 속에는 평화단체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활동가들, 대만의 입법위원, 남미 콜롬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후원한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 워크숍의 부제를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로 붙였다. 반세기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은 1박2일 내내 밖으로 말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폭격기 조종석에 앉은 예수?

워크숍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창수 실장의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형평성의 위기, 신장된 인권의식과 군대의 가치의 충돌 등 징병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직업군인 16만명과 지원병 14만명으로 구성된 병력 감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그는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만의 치엔시치에(簡錫皆) 입법위원은 대만의 대체복무제를, 콜롬비아에서 온 리카르도 편존(Ricardo Pinzon)은 중남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설명했다(상자기사 참조). 참가자들은 특히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대인권, 군사주의문화 등 징병제의 문제점이 두루 다뤄진 이 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집중적인 논의주제였다. 둘쨋날인 18일 오후 회의에서 이대훈(영국 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전공)씨는 국제법에 비춰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소개했다. 그는 한 평화운동가의 수기를 인용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얼마 전 나는 공군에서 막 제대한 조카와 식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왜 평화주의자가 더 부각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 아닌가? 각자에게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나

는 이렇게 답했다. ‘자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F-104 폭격기 조종석에 앉아 도시로 향하는 모습 말일세.’” (알 존스·이대훈의 발제문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에서 재인용)

이씨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논의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영역이 여전히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16세기 기독교 메노나이트(mennonite)파에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웨이커교도 등으로 확산됐으며, 냉전체제와 베트남전을 통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이유의 병역거부 흐름으로 확산되었다. 이씨는 덴마크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선구적 사례로, 집총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된 독일을 모범적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종교적 이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유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독일은 입영자 숫자와 맞먹는 15만명이 대체복무를 지원했다. 이대훈씨는 “유럽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확보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냉전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생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91년 국제엠네스티는 ‘정집대상자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적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확대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양심수로 간주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네트워크 구성하자”

엠네스티뿐 아니라 유엔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규정하고 각국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위는 87년 결의안 46호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을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규정했다. 98년 유엔인권위가 결의한 88호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이다. 유엔인권위는 이 결의안에서 각국 정부에 △병역거부로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처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난민으로 보호를 권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 이 결의안에 서명한 한국도 당연히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유엔인권위는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각국 정부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없다고 간략히 보고돼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은 훈련을 거부하는 예비군, 반인도적 무기생산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화학무기 같은 특정형태의 무기, 3세계 침략 같은 특정형태의 전쟁에 대한

‘선택적’ 거부도 포함된다. 이대훈씨는 “한국전쟁에 참전을 거부한 한국 군인들, 이 전쟁을 유색인종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겨 참전을 거부한 미국의 이슬람교도 군인 등 우리에게도 오래된 전통이 있다”며 “이런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90년대 양심선언을 한 경험이 있는 참석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음에도 당시에는 그 행동이 양심적 병역거부인지조차 몰랐다”고 회고했다.

발제가 끝난 뒤 양심적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절차 활용하는 방법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대훈씨는 “일단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인권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유엔에 알리고, 국제재판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유엔인권위의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해 방문 조사를 끌어내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18일 오후 3시, 주제별 토론이 모두 끝난 뒤 실천방향을 집중논의한 종합토론이 벌어졌다. 군대 인권과 관련해서는 병사권리장전의 제작과 배포가 제안되었다. 양심적 정집거부에 관련된 실천대안도 쏟아져 나왔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논의되었다. “네트워크 구성이 탈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한다”며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구제방법을 알려줄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정집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시민운동에서 소홀히 됐다”며 “활동가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시간의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집거부를 담은 소책자 발간과 홍보에 주력하기로 합의했고, 매달 월례토론회를 기약하며 수련원을 벌어놨다. 돌아오는 길가에는 ‘온평구 정병검사 기간’이라는 플랭카드가 나부끼고 있었다. 이들이 맞부딪쳐야 할 현실이다.

▷ 2001년03월20일 제351호 한겨레21 신윤동욱 기자 syulk@hani.co.kr

[특별기획] “세계의 양심은 하나”

-인터뷰/ 콜롬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 리카르도 편존
정집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벽’ … 거부하다 마약조직으로 몰리기도

콜롬비아에서 지구를 돌아 반 바퀴 돌아 서울까지 날아온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 리카르도 편존(Ricardo Pinzon). 지난 3월15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그는 지친 기색없이 열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그는 20대 중반 기독교 메노나이트파 신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

-콜롬비아 상황은 어떤가.

18살이 되면 정집을 실시한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 그 이하 학력이면 18~2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정집여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면제된 사람들은 15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빙곤층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결국 빙곤층은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촌 출신, 흑인, 원주민 등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지켜주는 셈이다.

-적대국이 있는데, 주적은 누구인가.

마약조직 같은 무장한 민간조직이다. 만약 병역을 거부하면 이들에 대한 협력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양심적 정집거부자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레미소스(remisos)라고 불리는 이들의 숫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가톨릭의 몇몇 교파들, 메노나이트파, 여호와의 증인, 사회·정치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이다.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투옥되고, 대학에 진학할 수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도 없다.

-콜롬비아의 병역거부운동 상황은.

90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모임(Colectivo por la objecion conciencia)이 결성됐다. 종교적, 정치적, 환경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속해 있다.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소그룹을 조직해 교육하는 활동을 주로 하며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비폭력 직접행동도 감행한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부의 탄압도 문제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정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였다. 그 벽을 깨기가 가장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운동의 성과로 국회에 열일곱번 대체복무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라틴아메리카 전체적 상황은.

90년대 들어 파라과이와 브라질에 대체복무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들 나라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93년부터 중남미 병역거부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생겼고, 1~2년마다 모여 회의를 갖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를 실천하는 행동이다.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니며 고난을 감수하는 용감한 실천이다. 한국이나 콜롬비아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양심은 하나다.

▷2001년03월20일 제351호 한겨레21

[씨줄날줄] 종교적 신념과 병역의무

얼마전 우연히 한 '여호와의 증인' 신자 가족에 관한 TV특집을 본 적이 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신병훈련소에서 집총(執銃)훈련을 거부해 감옥살이를 했던 어느 대학 교수이고, 큰아들도 정집 거부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 대학원생인 둘째 아들도 역시 정집 대신 감옥행을 각오하고 있었다. 큰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가족들의 표정이 더없이 담담하고 평온했다.

문득 20여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송아무개라는 청년이떠올랐다. 대전 출신이라는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집총훈련을 거부해서 군대 영창과 육군교도소를 거쳐 민간교도소로 넘어왔다고 했다. 3년형이 확정돼 2년 뒤면 나간다고 했다. 항상 미소를 짓고 다니며 웃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는 문자 그대로 '모범수'여서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존경어린 사랑을 받고 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무더기로 감옥에 들어오는 판에,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행을 마다하지 않은 그가 한심하게도 보였다. 그러나 그 역시 일종의 확신범 또는 양심범이라서 "이건 뭘가 잘못 돼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종교적 신념으로 정집이나 집총을 거부해 민간 교도소와 군대 영창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이 1,600여명이라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때마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집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감옥살이를 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방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로 신체와 정신이 건전한 남성이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서 병역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으로 정집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력낭비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정집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젊은이들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사회봉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 복무 대신에 사회봉사의무를 부여하는 게 문명국 일반의 확립된 법이론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가 인권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서 선진국 법이론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대한매일 2001-05-23[장윤환논설고문 yhc@kdaily.com]

[네티즌 칼럼] 軍복무 대체 봉사제 다양화를

죄짓고는 못사는 법이다. 고위층 병역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노항원사가 불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100여건의 병역비리를 통해 최소 20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사는 상사보다 위이고 소위보다 낮은 계급인데 어떻게 그토록 큰 병역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자탄의 목소리가 높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대부분 국방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군생활은 고생만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 빠질 수만 있다면 박씨 같은 브로커를 동원해 서라도 빠져보자는 경우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최근 종교적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찬반양론이 인터넷에서 불을 뿜고 있다. 각 언론사 토론판에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 종교인들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고 2년동안 교도소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20대 초반에 스스로 전과자로 낙인찍히길 감수하는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수

호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의 이해가 앞설 수 없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의 국가적 평화 상태가 전후방에서 군복무에 여념이 없는 젊은이 덕분임을 망각해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한 지식인은 종교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겐 대체봉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방서나 병원, 그밖에 군대와 관련이 없는 산업체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를 군 복무 기간만큼 수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군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젊음을 낭비했을 사람들을 더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장점으로 많은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 아직 이들 나라에서 대체봉사제도 도입으로 국가방위체제가 흔들렸다는 보고는 없다.

박노항 원사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 사회에서 병역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군생활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변화 과정에서 여전히 구시대적 권위주의 군문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지금은 중요한 때다. 남북화해와 같은 큰 분수령도 넘었다.

당국은 박노항 원사 검거를 계기로 병역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군이 내부에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해 젊은이들의 새로운 의식 변화를 담아줄 수 있는 환경으로 일신해야 할 줄 안다. 또 차제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대한매일 2001-05-02 [김 찬 영 부산대도서관 멀티미디어센터] cykim1@hyowon.pusan.ac.kr

[마이너리티의 소리] 양심적 병역거부 해법없나

그동안 한국적 특수상황이란 이유 때문에 물 밑 깊숙이 침잠돼 있던 중요한 이슈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거의 모두가 특정 종교 신자인 그들은 성경적 양심에 근거해 집총 거부 또는 입영 거부를 함으로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군 교도소와民間 교도소에서 약 1천6백명이 복역하고 있고 매년 교도소로 향하는 약 6백명의 발걸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현재 1만여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서도 이 나라에 양심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전에 미국에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다. 그가 사석에서 미국인들과 대화하던 중 한국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하자 미국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한국이 상당히 민주화한 나라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전의 얘기가 아니냐"고 반문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의외의 반응에 부끄러워 얼른 화제를 돌렸다고 한다.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만하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가까운 근본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결합된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그 이상이다. 천부적 인권이라고도 하며 법에 우선하는, 법 이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또 하나의 중대한 가치인 국가안보와 충돌을 빚을 때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두개의 큰 가치가 조화롭게 존중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의 도리다. 즉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국방과 평등주의에도 흠집을 주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대체복무제도다.

진실한 양심에 터잡은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를 대체복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양립하기 어려워보이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악수할 수 있는 절묘한 조화의 길이다.

이미 징병제하인 나라 중 30여 개국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남북 대치상황과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면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얻는 게 더 많다. 당사자가 징역살이와 전파자의 명예를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력의 낭비를 줄이고 고급인력을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 교정시설의 부족을 완화할 수도 있다. 민주제도의 우월성을 전시할 수 있는데다 양심적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의 구멍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매년 6백명 정도의 숫자는 해마다 징집되는 숫자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 재래식 전투에서 과학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 가장 우려하는 바가 사이비 양심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것인데 철저한 판정절차를 거친다면 염려할 바가 못된다.

더구나 그 기간과 힘든 역무를 고려할 때 단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양심을 가장해 대체복무를 택하는 사람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들이 엄밀한 판정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국민개병주의나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역특혜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단지 전쟁을 연습하지 않기 위해 군복무 대신 힘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뿐이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가 병역 거부자 처벌 때문에 사실상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이 평등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국가는 더 이상 처벌기계가 아니다. 제빵기계에서 똑같은 빵이 구워져 나오듯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천편일률적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기 위해 양산되는 일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 이지만 이제 활발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다.

▷ 중앙일보 2001-05-04 吳鍾權 변호사

[기리사니]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러니까 딱 30년 전이었다. 스물네 살 나이에 기약도 없는 옥살이를 예약해 놓고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간 나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와 있던 그는 매일 약상자를 들고 의무과 교도관과 함께 미결사동을 방문하는 '간병부'였다. 틀림없이 나에게 씌워진 어마어마한 '죄명'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박해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자신의

슬픔 때문에 나를 보는 그의 눈이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했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곱상하게 생긴 그의 이름을 나는 '김중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형. 그동안 잘 지냈는지요? 얼마 전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가 갑자기 기억의 아스라한 밀바닥에서 당신이 떠올라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다룬 그 브로의 주인공은 김세정씨라는 '여호와의 종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는 아들 둘을 교도소에 두고 있었고, 셋째아들의 감옥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클로즈업된 김세정씨 얼굴을 보면서 문득 그만한 연배가 됐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아들 하나쯤 교도소에 보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념으로 저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30개 교도소에서 16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종인'들이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핫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온갖 미신에 사로잡힌 집단 히스테리가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어떠한 평화운동도 반전운동도 성장하기 어려웠던 우리 사회에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열린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당신이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에 이미 동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널리 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법률이란 결코 '신성한 것'이 아니라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 민주주의는 그 국민에게 제도와 법률, 그리고 습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믿음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난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호원칙은 이제 우리나라로 당연히 준수해야 할 국제법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오랜 감옥생활 기간을 통해 꾸준히 저를 도와준 국제사면위원회의 한 회원을 만났습니다. 젊어서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졌다는 그 노인은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장 극악한 파괴행위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져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젊어서 옥살이를 했었지" 하면서 빙그레 웃는 그 노인은 알고보니 2차대전 때 병역거부로 두 달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빛 바랜 흑백사진을 꺼내 보듯이 당신이 가졌던 맑은 표정을 생각합니다. 그 표정에 영국에서 만났던 노인의 선량한 표정이 겹쳐옵니다. 당신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로지 신앙에서 나왔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류가 살아온 시대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려 고민하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비폭력은 서서히 자라는 식물이다.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성장한다."

부끄럽게도 30년 동안 잊고 지낸 당신의 고난을 이제야 생각하며 저는 이런 말을 실감해봅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감옥에서 고립무원했던 젊은 공안사범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 그 유물론자, 폭력의 구조를 떠받치는 그 어떤 '법'도 어기면서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어했던 그 '양심적 반전주의자'를 가끔은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 한겨레 2001-04-06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데스크칼럼] 신앙의 자유와 병역

1978년에 제대했으니 벌써 25년 넘게 지난 일이지만, 군 복무 시절 집총 거부로 고통을 겪는 여호와의 종인 신자들을 무신경하게 지켜본 일이 새삼 부끄러워진다. 독실한 여호와의 종인 신자인 성우 양지운씨가 지난주 편집국에 찾아와 집총 거부로 수감 중인 자신의 아들 얘기를 들려주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때까지 이 문제를 까마득히 잊고 지내왔다. 신병훈련소 조교로 군생활을 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종교적 광신 때문에 달걀로 바위를 치는 딱한 친구들' 정도로 치부했을 뿐이었다.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의연했다. 훈련을 거부하면 신병교육대와 사단 영창, 군교도소인 남한산성에서 잔혹한 폭력에 시달릴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총을 잡거나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에 배치된 남과 북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여호와께서는 어느 군대가 이기기를 바라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으로 보면 모두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군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간 교도소로 넘겨져 어김없이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야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들은 오늘도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고, 이 행렬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종교의 침례교인만도 8만7천여명에 이르고, 지금도 민간 교도소에 1300여명, 군 영창 및 교도소에 300여명 등 모두 1600여명의 젊은이들이 갇혀 있다.

교도소란 단지 사람을 가두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교화·교정하는 곳이다. 그러나 내가 군 생활을 하던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들은 전혀 교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둬 두어도 반성할 리가 없고, 사회적 격리의 의미도 없다. 허틀러 치하 강제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하면서도 신념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서슬퍼런 일제 강점기에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남북 대치를 이유로 또 '이단'이라는 이유로 정면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사회적 냉대 속에서 이들의 감옥행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 필요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대체적 봉사의무가 부여돼야 한다는 게 문명국가의 확립된 법이론이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령을 발동한 미국에서는 신앙을 이유로 참전을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집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독과 오래 맞서왔던 서독에서도 일찍이 헌법에 "누구도 그의 양심에 반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군복무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륙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도 지난해 9월 대체 사회봉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거부자들을 주로 보조 간호사로 병원에 배치해 궂은일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병원근무가 특혜처럼 비친다면,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워야 하는 소방관, 질주하는 차량들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청소원, 살인적인 악취에 시달려야 하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원, 무인도 등대지기 등 군대생활만큼이나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어떤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가둬두는 대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절규를 묵살하고 여호와의 종인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 3년형을 구형·선고하는 법조인들에게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이렇게 묻는다.

"신앙과 양심의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에 따라 자신에게 닥쳐오는 형벌의 불이익을 감내하는 여호와

의 중인들이 양심적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고민 없이 법을 적용해 온 법률가들이 더 양심적인가?"
한 교수의 질타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비단 법률가들만일까.

▷한 겸 레 2001-02-20 이상현 문화부장 shlee@hani.co.kr

기고/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일제지배 아래 냉전시대를 통해 메카시즘의 광풍은 우리의 정신을 불구기형으로 찌그려뜨려 놓았다. '아카'(赤)가 빨갱이란 말로만 바뀐 채 일제시대 고문경찰은 노덕술을 대물림해 이근안까지 왔다. 앞으로 누가 새로운 노덕술로 나타날지 아직도 위험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그러진 추한 꽂은 사상과 신앙에서 이의 제기자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사회 불문율이다.

결국 우리는 시민사회 이전의 암흑시대를 살고 있다. 반공과 애국이란 간판으로 독재와 부패기득권 질서가 온 민중에게 쇠고랑을 채운 독재시대의 유산을 안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독일헌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출렬한 상식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징병제 시행 당시 미국 병역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도 냉전시대의 메카시주의자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잘 납득이 안 간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위 반이나 군형법의 상관명령 불복종의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옥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우리 상식(?)을 거스르는 일은 미국헌법 아래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그 정반대의 성질인 '인민무장의 권리'를 건국의 아버지가 헌법에 보장했다는 점이다(헌법 수정2조). 이 인민무장권은 압제에 저항할 인민의 고유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 악법과 폭정에 대항하는 인민의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권의 근거는 일찍이 1776년의 독립선언에 명시되었다. 인민이 무장을 하는 권리가 인민이 무장을 거부하는 권리와 같은 차원의 자유의 정신에서 유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시민정신의 원류를 내 것으로 해내야만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니게 되고 또 지켜낼 수 있다.

양심 사상의 자유가 제자리를 못찾는 한에선 시민사회나 시민국가의 개인의 위상은 해당초 없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을 주권자라고 정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허상의 도깨비 귀신에 흘려 인권이란 제도가 실종되었다.

한국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국방의 의무를 들어서 단죄한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양심에 따른 도의적 의무와 실정법상의 국가의무가 갈등, 충돌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초실정법적 자연법적 의무란 문제를 법조문의 형식논리로 가볍게 지나쳐 버리는 법원은 세계에 우리나라 법원 정도일 것이다. 국가관과 법철학의 심각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인의 신앙자유와 권력의 법적 강제의 한계가 논구되어야 한다. 권력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 이것이 없다.

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정법 위반의 범죄로 처벌과 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원천적 박탈 같은 야만적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 공권력은 개인의 신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역의무가 있다. 다른 선진국이 모두 이를 강구하는데 유독 우리만 몰라라 하고 묵살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정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서구에서처럼 개인의 양심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목숨을 내건 대중적 전통이 부족했다. 조선말 대원군 집정하에 천주교도의 순교나 일제하 신사참배거부 투쟁의 순교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도 주자학 일변도의 나랏님 질서에서 식민지 암흑기를 거치면서 신앙 사상을 독점관리하는 전제 권력에 순치되어 왔다. 더욱이 독립되었다는 마당에서도 냉전시대의 메카시즘의 광풍이 시민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유롭게 믿고 생각하여 자기를 주장하는 기백을 꺾어버렸다.

지금도 우리는 말썽많은 '이단아' 옆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봉변을 당할까 허둥대며 몸조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예적 굴종의 지속으로는 시민이 될 수 없다. 우선 소수 이단자의 양심 신조를 법률이 보호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대 전기를 내디뎌야 한다. 그래야만 냉전논리로 불구기형이 된 정신의 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소수의 이단아에 대해 박해만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는 건전한 정상적 상태를 회복할 때다. 바로 그것이 인간 복권의 시작이란 것을 새삼스럽지만 실감하고 재확인 할 심각한 결단을 할 때라고 본다.

▷한 겸 레 2001-02-23 한상범 교수

[발언대] 양심따른 병역거부 대체복무를

1961년 한국에서 징집영장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23세의 '여호와의 중인' 신자였던 나는 성경에 기초한 양심으로는 군대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가 없었으므로 나는 감옥에 갈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나는 심한 편평족 때문에 군복무를 면제받았지만 같은 신자였던 내 친구 2명은 징집 거부로 3년간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출소한 뒤에도 이들은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었다. 나도 징집을 면제받지 않았으면 십중팔구 같은 운명을 겪었을 것이다.

1999년 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1100명 가량의 여호와의 중인이 징집거부로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의 '죄'는 성경에 따라 사해동포의 정신으로 형성된 양심 때문에 군에 가기를 거부했다는 것밖에 없다. 한국 전체의 여호와의 중인 신자가 9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90명 중 한명은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미국에 적용한다면, 미국에는 100만 명 정도의 여호와의 중인 신자가 있기 때문에 군에 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만2000명 가량의 젊은이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인권존중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에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파에 관계없이 대체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게 내 생각이다. 군사적 긴장감이 우리 못지 않은 대만도 2000년 7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징병거부자들에게 산림 녹화, 원양어업, 중환자 간병 등 대체복무 기회를 주는 제도를 채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군에 가기 싫어서 종교를 가장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법규정을 정하기 나름이다. 우선 군복무보다 민간부문 복무기간을 더 길게 하는 방안이 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기피한다는 이른바 3D업종의 일을 시키는 것도 가짜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들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일보 2001-03-14 남선우(미국 변호사)

MEMO

